

⑧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류선행	044-200-5630
		사무관 장석준	044-200-5635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고부가가치 스틸헤드, 연어류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연어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사업별 공정단계	기본계획	-	-	-	-	'25.1	사업추진 보고서 (지자체 문서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86	3,044	15,640	
- 국 비	326	913	4,692	
- 지방비	326	913	4,692	
- 자부담	434	1,218	6,256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민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간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인정할 만한 사유로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세부사항은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름
- 보조사업자: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 민간사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연구기업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해당 사업예정자 포함)
- * 법인 설립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수산양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

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 선정 취소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센터 조성 사업비(개소당 총사업비 197.7억원 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모니터링 장비, 데이터처리 시스템, 자동화 설비)들을 접목한 연어류·스틸헤드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성 사업비(기본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비용 등)
 - * 전체 사업비 중 연어류·스틸헤드 양식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60% 이상이어야 함(단, 자부담 추가 투입 시 해당 비용 제외)
- 수익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양성, 선도모델 확산장소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양식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사육데이터는 공개하여야 한다.

- (집행제한)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59.31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변동현황 공시 기간
부동산과 그 증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증물의 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 기간

분류	구분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기준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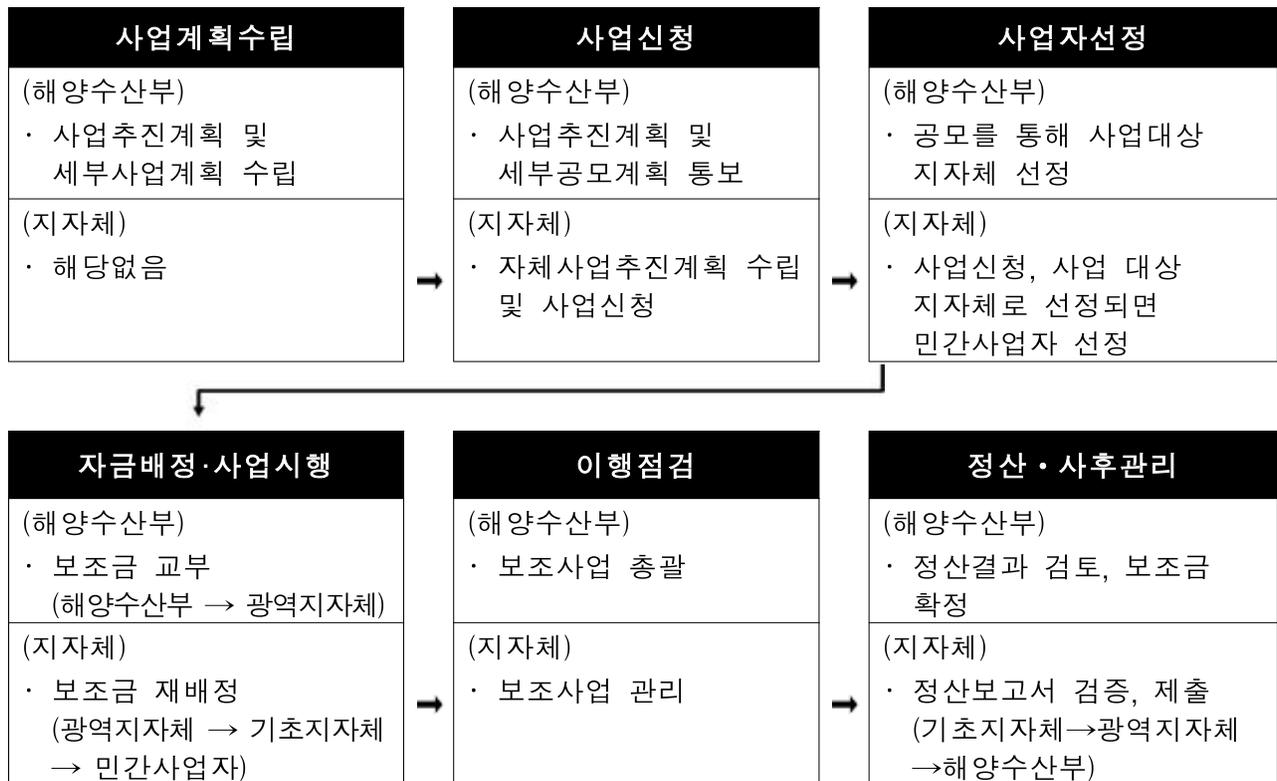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 주관으로 연어류및스틸헤드양식 산업화 모델을 기획하고, 시행지침 및 공고된 공모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민간사업 계획으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시·군·구 예비사업자 우선순위대로 사업 즉시 착수가능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1)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2), 정산서(서식3),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

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
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
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서식1】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4분기)

기본 현황(기존 자료 인용)

항 목	내 용
부지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현황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핵심사항 위주 1페이지)

○ 추진현황

-
- *
-
-
-

○ 향후계획

-
- *
-
-
-

□ '24년 국비 실집행 현황 및 계획 (분기말 재정시스템 기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조성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23	-	-	-	-	-	○
2024	-	-	-	-	-	
2025	-	-	-	-	-	

□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 포함)

○

-

*

○

-

*

【서식3】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보조금 정산서

1.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